

#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888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5. 7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최수진 · 임종득  
강대식 · 유용원 · 김 건  
서명옥 · 최은석 · 이달희  
성일종 · 고동진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「항공안전법」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불 진화,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.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,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

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,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경찰·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의 제목 중 “항공기”를 “항공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전단 중 “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(이하 “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”라 한다)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”로 하며, 같은 조 후단 중 ““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”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찰용 항공기
2. 세관용 항공기
3. 「산림재난방지법」에 따른 산림항공기[임차(賃借)한 경우는 제외한다]
4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항공기(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)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의2(경찰용·세관용 <u>항공기</u>의 감항인증)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</u>(이하 “<u>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</u>”라 한다)에 준용한다. 이 경우 “<u>군용항공기</u>”는 “<u>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</u>”로 본다.</p> <p>&lt;신 설&gt;<br/>&lt;신 설&gt;<br/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2조의2(경찰용·세관용 <u>항공기</u>들의 감항인증) -----<br/>-----<br/>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경찰용 항공기</u></li> <li>2. <u>세관용 항공기</u></li> <li>3. 「<u>산림재난방지법</u>」에 따른 <u>산림항공기</u>[<u>임차(賃借)한 경우는 제외한다</u>]</li> <li>4. 「<u>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소방항공기</u>(<u>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</u>)</li> </ol> |